

여객자동차운송사업(시내버스) 개선명령

☐ 관련규정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)

☐ 개선명령 사항

- 운송사업자 : 대창운수, 삼원운수
- 명령노선 : 5개 노선(05, 급행05, 09, 10, 10-1
- 명령내용 : 미경유 및 우회운행 [붙임 문서 참조]
- 명령기간 : 2026.10.31.(토) ~ 공사완료시까지
- 명령사유 : 도로공사로 인한 운행 불가

☐ 기타사항

-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

개선명령 사항 이후에는 종전대로 환원하여 운행하여야 하며, 공사기간 중 개선명령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인원의 통제에 협조하기 바람